

의안번호	2219585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계번호	26D3109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(안 제37조의3 신설)	18	18	18	18	18	90	18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의3 제1항·제2항(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)	—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의 표시 제한 내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※안 제37조의2¹⁾(현수막 표시 제한)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37조의3 제7항(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)	—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둠	의무규정

1) 개정안 제37조의2(현수막 표시 제한)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특정 정당, 후보자 또는 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
2. 인종, 출신국가, 지역, 성별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여 사회적 대대감을 조장하는 것
3.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7조의3 제1항·제2항(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)	○	-
2	안 제37조의3 제7항(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)	×	○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, 사무국의 조직·직무범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의 조직·인력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외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봄
 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 수 9명 이내를 고려하여 이 중 과반수인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, 연간 1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참석수당은 30만원²⁾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회의참석수당) 개정안에 따라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800만원, 5년간 총 9,000만원으로 추정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5명이며, 위원회는

2) 기획예산처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연간 12회 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당 지급 횟수 (a, 5명×연 12회)	60	60	60	60	60	300
회의참석수당(b)	0.3	0.3	0.3	0.3	0.3	0.3
계(a×b)	18	18	18	18	18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